

# 해외 인프라 청년 인턴십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

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통칭하여 이하 '협약기관'이라 한다) 및 해외건설협회(이하 '주관기관'이라 한다)는 해외사업 관련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해외 실무경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추진하는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교육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협약기관은 해외사업 관련 청년 인턴 채용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협력한다.

1. 해외사업 관련 청년 인턴 공동 채용
2. 청년 인턴 해외파견 전 교육
3.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교환
4. 그 밖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

**제3조(협의체)** ① 주관기관은 협력분야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세부업무 협의를 위하여 협약기관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한다.

**제4조(공동 채용)** 협약기관은 해외사업 관련 청년 인턴 수요를 최대한 발굴하고, 연1회 공동으로 인턴 채용을 추진한다.

**제5조(주관 기관의 업무)** 공동 선발 및 합동교육을 전담한다.

**제6조(홍보)**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한 홍보는 주관기관이 다른 협약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한다.

**제7조(비용 지급 및 부담)** 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제3조 협의체에서 결정한 총액을 협약기관 인턴 수요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.

**제8조(신의성실)** 협약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업무협약의 이행을 위해 상호 협조하고 성실히 임한다.

**제9조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** 협약기관은 다른 협약기관과 주관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상 지위 또는 권리,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.

**제10조(협약의 해석 및 변경)** ①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협약기관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협약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1조(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)** ① 협약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. 협약기관 내부의 사정으로 해외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 할 수 없는 경우
2. 협약기관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

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주관기관과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효력 및 유효기간)**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, 업무협약서상 특별한 변경이 없을 시 매년 자동으로 연장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과 주관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9월 30일

한국토지주택공사

부사장

장 옥 선

장 옥 선

한국도로공사

부사장

이 강 훈

이 강 훈

한국수자원공사

부사장

곽 수 동

곽 수 동

한국철도시설공단

부이사장

전 만 경

전 만 경

한국국토정보공사

부사장

조 만 승

조 만 승

한국해외인프라  
도시개발지원공사

전략기획본부장

서 태 원

서 태 원

해외건설협회

부회장

송 영 완

송 영 완